

제1682호

2023. 3. 3.

발행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조 성 명  
편집인 : 정 책 홍 보 실 장 오 은 향  
전 화 : 0 2 - 3 4 2 3 - 5 0 8 5

# 구 보

## 입 법 예 고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17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br>입법예고..... 3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21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5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23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br>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33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br>조례안 입법예고..... 20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48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br>조례안 입법예고..... 27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5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br>조례안 입법예고..... 31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55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59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br>조례안 입법예고..... 42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61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br>조례안 입법예고..... 53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64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2  |

## 고 시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40호 |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준공인가 고시... 78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41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80               |

#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498호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8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02호

청담근린공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8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본 구보의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행정정보→행정알림→구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 의뢰 및 편집문의 (☎ 02-3423-5085 / 모사전송 02-3423-8820)

◎ 구보발간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간)이며, 발간일 3일전(화요일)까지 게재의뢰

D-3일 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최종편집

→

D일 발간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공 |  |  |  |  |  |  |  |  |  |
| 람 |  |  |  |  |  |  |  |  |  |

# 강 남 구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1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내용 일부 변경  
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을 적용하여 개정함(안 제2조)

##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도로관리과장, 주소 : 강남구 학동로 426(제2별관 도로관리과), 전화: 02-3423-6554, FAX: 02-3423-8852, E-mail: yurisle@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9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를 “제19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br>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br>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br>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br>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br>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br>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br>에 응한다. | 제2조(기능) -----<br>-----<br>-----<br>----- 제19조제5항제2호<br>부터 제7호-----<br>-----<br>-----<br>-----. |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2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 적용대상,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5조)
- 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9조)
- 라.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안 제10~14조)
- 마. 표창 및 시행규칙(안 제15~1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pse0614k@gangnam.go.kr
-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 3) 팩스 : 02-3423-883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전화 : 02-3423-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안정 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10조제2항 관련)

| 연번 | 명 칭                | 위 치                               |
|----|--------------------|-----------------------------------|
| 1  | 강남구 1인가구<br>커뮤니티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br>지상 1층~ 2층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2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 삭제하고,
- 나. 조례의 주요 대상을 조정·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나.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강남구 주민으로 확대(안 제1, 2, 5, 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pse0614k@gangnam.go.kr
-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 3) 팩스 : 02-3423-883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전화 : 02-3423-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 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개인 · 단체 · 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3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강남구 민간위탁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명시 (안 제7조)
- 나. 수탁기관 협약 등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안 제12조)
- 다. 위탁 취소 사유 명시 (안 제13조)

- 라. 시설, 장비, 비용 등이 위탁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통제장치 마련(안 제14조)
- 마.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 명시(안 제1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yourgarden@gangnam.go.kr
-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기획예산과
- 3) 팩스 : 02-3423-8828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기획예산과(전화 : 02-3423-54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제12조의 제목 “(협약의 체결)”을 “(협약의 체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제13조제3항 중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및”을 “법령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진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수탁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br>1. ~ 5. (생략)<br><u>&lt;신설&gt;</u>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br>-----<br>-----<br>-----.<br>1. ~ 5. (현행과 같음)<br><u>6.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u> |

6. (생 략)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생 략)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제13조(지휘·감독)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3조(지휘·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  
-----  
-----  
--.

1.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                                                                                                                                                                                                  |
|---------------------------------------------------------------------------------------------------------------------------------|--------------------------------------------------------------------------------------------------------------------------------------------------------------------------------------------------|
| <p>④ · ⑤ (생 략)</p> <p>제14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 규칙을 준수하고 협약에 따른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p> <p>-----</p> <p>--- 법령 및 -----</p> <p>-----</p> <p>-----.</p> <p>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 장비 ·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 진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
| <p>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 <p>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p>③ ~ ⑤ (생 략)</p>                                                                                                              |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가. 해당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하 운영  
규정, 병무청훈령 제1864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례 조문  
을 현행화하여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나. 운영규정 제2조의 3항 “병역명문가 가족” 범위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  
우자, 자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로 변경됨 (2020. 2. 10. 일부개정)

## 2. 주요내용

“예우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로 확대하고자함(안 제2조 3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강남구 학동로426 본관4층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apple9942@gangnam.go.kr
- 팩 스 : (02) 3423 - 883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복지정책과(전화 :02- 3423 - 5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를 “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2. (생략)<br>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u>모</u> ,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2조(정의) -----<br>-----.<br>1. 2. (현행과 같음)<br>3. -----<br>----- <u>부모</u> -----<br>-----.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5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국내에 한정된 강남복지재단의 재난재해 긴급지원 목적사업을 국외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나.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개념 등을 명확화하고 예산편성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다.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내용 적용

## 2. 주요내용

- 가.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국내를 국외로 변경 (안 제4조)
- 나. 일본어 투 표현의 용어 정비 (안 제7조)
- 다. 공개경쟁시험 문구에서 시험을 삭제 (안 제10조)
- 라.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조항 125조에서 140조 변경에 따른 적용 명시 (안 제15조)
- 마. 종전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기간을 사업연도 1개월 전  
까지에서 3개월 전까지로 변경 (안 제1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yj1006@gangnam.go.kr
-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 3) 팩스 : 02-3423-883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전화 : 02-3423-5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http://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복지관련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을 “복지관련 시설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국내”를 “국내외”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차례에 한정하여”를 각각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공개경쟁시험”을 “공개경쟁”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br>1. 2. (생략)<br>3. <u>복지시설</u>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br>4. ~ 6. (생략)<br>7. <u>복지관련시설</u> , 자원봉사센터 등 운영<br>8. <u>국내</u>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br>9. (생략)<br>② (생략) | 제4조(재단의 사업) ① -----<br>-----<br>-----.<br>1. 2. (현행과 같음)<br>3. <u>사회복지시설</u> -----<br>-----<br>4. ~ 6. (현행과 같음)<br>7. <u>사회복지시설</u> -----<br>-- <u>복지관련 시설 운영</u><br>8. <u>국내외</u> -----<br>--<br>9.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7조(임원) ①·② (생략)<br>③ 이사장은 구의회 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u>차례에 한</u> <u>정하여</u>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br>④ (생략)<br>⑤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u>차례에 한</u> <u>정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      | 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 <u>차례만</u> ----<br>-----<br>-----.<br>④ (현행과 같음)<br>⑤ -----<br>----- <u>차례만</u> -<br>-----<br>-----                                                                       |

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  
免)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  
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를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  
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생략)

-----.  
-----.

제10조(직원) -----  
-----  
-----  
-----  
공개 경쟁-----  
-----  
-----  
-----.

제15조(사업연도) -----  
--- 「지방자치법」 제140조---  
-----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  
----- 3개월 -----  
-----.  
-----  
-----  
-----  
-----.

②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개인 · 단체 · 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5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생활보장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 의위원회(이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라 한다)에서 생활 보장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체화(안 제1조)

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지방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소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사회보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201703076@gangnam.go.kr
-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4층(삼성동) 강남구청 사회보장과
- 3) 팩스 : 02-3423-8837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사회보장과(☎ 02-3423-58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을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으로, “사항을 정함”을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br>-----<br>-----<br>-----<br>-----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5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삭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유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다. 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별도 명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현행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기능의 정비를 통해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관련 기능 추가 (안 제3조제3호)
- 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기능 구체화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역할 삭제 (안 제5조제1항1~4호)
- 다. 조직개편 관련 변경내용 반영 (안 제6조제2항)
-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관련 조항 별도 신설 (안 제1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boeun2065@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3) 팩스 : 02-3423-5788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전화 : 02-3423-57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http://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보장증진”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제6조제2항 중 “복지자원팀장, 여성정책팀장”을 “복지자원팀장”으로, “보건지도팀장”을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감염병예방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llegible]

⑤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  
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  
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  
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  
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검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  
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삭 제>

<삭 제>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  
-----  
-----  
-----  
-----  
-----  
-----  
-----.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  
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  
의·건의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  
1항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  
한 사항

5. ~ 7. (생략)

② (생략)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  
영) ① (생략)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  
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  
촉하며, 복지정책과장, 복지자  
원팀장, 여성정책팀장, 생활보  
장팀장, 어르신정책팀장, 보건  
지도팀장, 의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생략)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전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  
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  
진-----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  
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복지자원

팀장-----

----- 장애

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감

염병예방팀장-----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  
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조(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  
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  
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  
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                                       |                                                                                                                                                                                                |
|---------------------------------------|------------------------------------------------------------------------------------------------------------------------------------------------------------------------------------------------|
| <p><u>제14조</u> ~ <u>제18조</u> (생략)</p> | <p><u>협업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u></p> <p><u>⑤ 대표협업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업체 위원장은 실무협업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업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제15조</u> ~ <u>제19조</u>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p>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개인 · 단체 · 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6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기존 자치법규의 제5조4항(관리·운영의위탁)에 열거된 위탁시설은 관내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제2조제1호(정의)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제5조의 3항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할 목적으로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관내 설치·운영하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1호)
- 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 제5조3항)
- 다. 제3조(설치 등)과 관련된 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 기능 를 현황화 함 ([별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강남구 학동로426 본관4층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2015071722@gangnam.go.kr
  - 팩 스 : (02) 3423 - 883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복지정책과(전화 :02- 3423 - 57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을”을 “사회복지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 이”를 ““시설”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시설”로 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로, “따른다”를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정 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 될 경우에는”을 “같은 위치에 동일 분야의 여러 시설을 하나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 연<br>번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주관<br>부서   |
|--------|--------------|------------------|--------------------------------------|------------|
| 1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개포로109길 5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복지<br>정책과  |
| 2      | 대청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
| 3      |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광평로51길 49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
| 4      | 수서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광평로56길 11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
| 5      | 강남구푸드지원센터    | 강남구 삼성로72길 7     |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            |
| 6      | 강남지역자활센터     | 강남구 개포로38길 12    |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                        | 사회<br>보장과  |
| 7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 강남구 삼성로 628      |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 어르신<br>복지과 |
| 8      | 논현노인종합복지관    |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59  |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            |
| 9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 강남구 봉은사로24길 70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            |
| 10     | 한아름재가노인지원센터  | 강남구 개포로24길 29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            |
| 11     | 강남70+라운지     |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20 |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            |
| 12     | 강남시니어플라자     | 강남구 봉은사로 332     |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            |
| 13     | 강남실버센터       | 강남구 삼성로 628      |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            |
| 14     | 역삼노인복지센터     | 강남구 도곡로27길 27    |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            |
| 15     | 압구정노인복지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53길 5    |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            |
| 16     | 대치노인복지센터     | 강남구 역삼로69길 22    |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            |
| 17     | 논현노인요양센터     |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59  |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            |
| 18     | 역삼노인요양센터     | 강남구 도곡로27길 27    |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            |
| 19     | 대치노인요양센터     | 강남구 역삼로69길 22    |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            |
| 20     | 강남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삼성로 62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1     | 역삼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곡로27길 27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2     | 압구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53길 5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3     | 대치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역삼로69길 22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4     | 학수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17길 45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5     |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언주로70길 1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6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136길 5-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7     | 명화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광평로51길 49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8     | 목련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9     | 세심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115길 35-1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30     | 세곡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현릉로590길 68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31     | 강남장애인복지관     | 강남구 개포로 603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등 제<br>공 | 장애인<br>복지과 |
| 32     | 강남세움복지관      | 강남구 광평로60길 22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등 제<br>공 |            |
| 33     |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광평로60길 22    |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
| 34     | 해마울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
| 35     | 역삼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
| 36     |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   | 강남구 광평로60길 22    | 장애인 단기거주서비스 제공                       |            |
| 37     | 강남세움근로사업장    | 강남구 광평로60길 22    |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           |            |

|    |               |                  |                                |           |
|----|---------------|------------------|--------------------------------|-----------|
|    |               |                  | 급                              |           |
| 38 | 강남세움보호작업장     | 강남구 광평로60길 22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      |           |
| 39 |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 강남구 광평로60길 22    | 장애인 작업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 제공         |           |
| 40 | 강남구수어통역센터     | 강남구 학동로 343      |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           |
| 41 |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강남구 광평로 144      | 청소년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
| 42 | 강남청소년수련관      | 강남구 영동대로131길 26  | 청소년 취미 및 여가생활 프로그램 제공          | 가족<br>정책과 |
| 43 | 역삼청소년수련관      | 강남구 논현로64길 7     | 청소년 취미 및 여가생활 프로그램 제공          |           |
| 44 | 일원청소년독서실      | 강남구 개포로116길 21   | 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           |
| 45 | 역삼다함께키움센터     | 강남구 논현로64길 7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 46 | 청담다함께키움센터     | 강남구 영동대로131길 26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 47 |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 강남구 영동대로 22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 48 | 자곡다함께키움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 49 |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역량강화 등 정보제공 |           |
| 50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 강남구 봉은사로 320     | 여성의 취·창업 지원, 역량강화 평생학습 등 제공    |           |
| 51 | 강남구가족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 교육, 상담, 문화, 지원 등 가족서비스 제공      |           |
| 52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강남구 삼성로72길 7     |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지원                 | 보육<br>지원과 |
| 53 | 가로수 어린이집      | 강남구 압구정로18길 2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54 | 가온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618길 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55 | 강남테시아포레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34길 5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56 | 강남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109길 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57 | 개포스타힐스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 1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58 | 구민회관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 15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59 | 논현 어린이집       |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6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0 | 다솔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 26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1 | 대청 어린이집       | 강남구 양재대로37길 1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2 | 대치도담 어린이집     | 강남구 선릉로64길 33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3 | 대치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65길 1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4 | 도곡 어린이집       | 강남구 선릉로 21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5 | 디에이치자이개포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 2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6 | 래미안라클래스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 65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7 | 명화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51길 4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8 | 목련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 617-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69 | 미담 어린이집       | 강남구 일원로 11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70 | 바롬 어린이집       | 강남구 언주로164길 3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71 | 방죽 어린이집       | 강남구 밤고개로24길 7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72 | 보람 어린이집       | 강남구 남부순환로397길 1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73 | 보미나 어린이집      | 강남구 학동로20길 2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74 | 산들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3길 4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             |                  |                    |
|-----|-------------|------------------|--------------------|
| 75  | 삼성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122길 7-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6  | 선우 어린이집     | 강남구 도곡로18길 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7  | 선재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71길 3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8  | 선혜 어린이집     | 강남구 선릉로 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9  | 성아 어린이집     | 강남구 논현로32길 1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0  | 세곡나비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 23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1  | 세곡연두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3길 2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2  | 세곡푸르지오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 2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3  | 세곡햇빛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 26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4  | 소담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110길 5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5  | 수서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24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6  | 수연 어린이집     | 강남구 봉은사로59길 2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7  | 신동아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590길 1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8  | 신사 어린이집     | 강남구 도산대로15길 2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9  | 신한마리오 어린이집  | 강남구 테헤란로30길 2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0  | 압구정아람 어린이집  | 강남구 압구정로 31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1  | 압구정 어린이집    | 강남구 언주로157길 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2  | 언북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135길 4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3  | 역삼가에 어린이집   | 강남구 도곡로37길 1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4  | 역삼 어린이집     | 강남구 테헤란로22길 4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5  | 연화 어린이집     | 강남구 학동로43길 1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6  | 예다솜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571길 2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7  | 예지 어린이집     | 강남구 언주로7길 23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8  | 예향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22길 8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9  | 오르다 어린이집    | 강남구 봉은사로73길 3-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0 | 일원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3길 2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1 | 자곡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 17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2 | 지혜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 1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3 | 청담 어린이집     | 강남구 도산대로56길 1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4 | 청마을 어린이집    |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5 | 청수 어린이집     |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6 | 초록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7 | 초롱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 62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8 | 포레스트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 26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9 | 푸른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7길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                |                    |  |
|-----|-------------|----------------|--------------------|--|
| 110 | 한별 어린이집     | 강남구 봉은사로82길 23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111 | 한빛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34길 3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112 | 한울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51길 2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113 | 한티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114 | 해솔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590길 8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115 | 힐스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3길 2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116 | 강남구청직장 어린이집 | 강남구 학동로 42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 2.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 2.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 2.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 2.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 2.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
|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                                                                                                     |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                                                                                                     |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                                                                                                     |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                                                                                                     |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                                                                                                     |

하 “시설”이라 한다)을 구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  
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  
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  
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  
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  
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  
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운  
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  
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  
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

-- “시설”이-----  
-----  
-----  
-----.

5. -----  
----- 시설-----  
-----  
-----  
-----.

6. -----  
----- 시설-----  
-----  
-----  
-----.

제4조(적용범위) -----  
--- 다른 -----  
-----  
-----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 법 제34조제5  
항-----  
-----  
-----

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

<삭 제>

③ -----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  
-----  
-----  
-----  
---. -----

구의회

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 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 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련시설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련시설
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뱅크/마켓
5.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

의회

-----  
-----.

⑥ -----  
-----  
-----  
----- 한정하여 -----  
-----.

----- 같은  
위치에 동일 분야의 여러 시설  
을 하나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에는 이를 -----  
-----.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
|----------------------------------------------|------------------------------|
| <u>른 청소년쉼터</u>                               |                              |
| 7.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br><u>여성관련시설</u>            | <u>&lt;삭 제&gt;</u>           |
| 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br><u>린이집</u>              | <u>&lt;삭 제&gt;</u>           |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br><u>육정보센터·육아지원센터</u>     | <u>&lt;삭 제&gt;</u>           |
| 10.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br><u>건강가정지원센터</u>         | <u>&lt;삭 제&gt;</u>           |
|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br><u>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u>      | <u>&lt;삭 제&gt;</u>           |
| 12.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br><u>함께돌봄센터</u>           | <u>&lt;삭 제&gt;</u>           |
| 13.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br><u>다문화가족지원센터</u>        | <u>&lt;삭 제&gt;</u>           |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생<br>략)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현행<br>과 같음) |
| ②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전<br><u>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 | <u>&lt;삭 제&gt;</u>           |

신 · 구별표대비표

| 현행                                                                                                                                                                                                                                                                                                                                                                                                                                                                                                                 |               |                    |                         |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연번</th><th>시 설 명</th><th>위 치</th><th>주요기능</th><th>주관부서</th></tr><tr><td>5</td><td>강남구기초푸드뱅크</td><td>강 남 구 광 평 로 56길 11</td><td>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td><td rowspan="4">복지정책과</td></tr><tr><td>6</td><td>강남푸드마켓미소(일원점)</td><td>강 남 구 개 포 로 605</td><td>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td></tr><tr><td>7</td><td>강남푸드마켓미소(대치점)</td><td>강 남 구 삼성 로 72길 7</td><td>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td></tr><tr><td>8</td><td>사랑나눔이동푸드마켓</td><td>강 남 구 학 동 로 426</td><td>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td></tr></table> |               |                    |                         |       | 연번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주관부서 | 5 | 강남구기초푸드뱅크 | 강 남 구 광 평 로 56길 11 | 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 | 복지정책과 | 6 | 강남푸드마켓미소(일원점) | 강 남 구 개 포 로 605 | 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 | 7 | 강남푸드마켓미소(대치점) | 강 남 구 삼성 로 72길 7 | 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 | 8 | 사랑나눔이동푸드마켓 | 강 남 구 학 동 로 426 | 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 | <div>&lt;삭 제&gt;</div> |  |  |  |  |
| 연번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주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강남구기초푸드뱅크     | 강 남 구 광 평 로 56길 11 | 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 | 복지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강남푸드마켓미소(일원점) | 강 남 구 개 포 로 605    | 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강남푸드마켓미소(대치점) | 강 남 구 삼성 로 72길 7   | 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사랑나눔이동푸드마켓    | 강 남 구 학 동 로 426    | 저 소 득 주 민 및 결식해소 식생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번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주관부서   |
|----|-------------|--------------------|---------------------------------|--------|
| 9  | 강남장애인복지관    | 강남구 개포로 603        | 장애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과  |
| 10 | 강남세움복지관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
| 11 |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
| 12 |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단기거주 서비스 제공                 |        |
| 13 | 강남세움보호작업장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       |        |
| 14 |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작업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 제공          |        |
| 15 | 강남세움근로사업장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에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
| 16 | 해마을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
| 17 |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
| 18 | 강남지역자활센터    | 강남구 역삼로 107길 20-30 |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사업                  |        |
| 29 | 강남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삼성로 62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어르신복지과 |
| 30 | 역삼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31 | 압구정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연번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주관부서   |
|----|------------|--------------------|----------------------------------|--------|
| 31 | 강남장애인복지관   | 강남구 개포로 603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등 제공 | 장애인복지과 |
| 32 | 강남세움복지관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등 제공 |        |
| 33 |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
| 36 |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단기거주 서비스 제공                  |        |
| 38 | 강남세움보호작업장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        |        |
| 39 |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작업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 제공           |        |
| 37 | 강남세움근로사업장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에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
| 34 | 해마을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
| 35 | 역삼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
| 6  | 강남지역자활센터   | 강남구 역삼로 107길 20-30 |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사업                   | 사회보장과  |
| 20 | 강남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삼성로 62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어르신복지과 |
| 21 | 역삼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22 | 압구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    |                           |                        |                   |  |
|----|---------------------------|------------------------|-------------------|--|
|    | 터                         |                        |                   |  |
| 32 | 대 치 노 인<br>데 이 케 어<br>센 터 | 강남구 역삼<br>로 69길 22     | 노인 재가복지서<br>비스 제공 |  |
| 33 | 학수정노인<br>데이케어센<br>터       | 강남구 도산<br>대로 17길<br>45 | 노인 재가복지서<br>비스 제공 |  |
| 36 | 명 화 노 인<br>데 이 케 어<br>센 터 | 강남구 광평<br>로 51길 49     | 노인 재가복지서<br>비스 제공 |  |
| 37 | 목 련 노 인<br>데 이 케 어<br>센 터 | 강남구 개포<br>로 617-8      | 노인 재가복지서<br>비스 제공 |  |

<신 설>

|    |                    |                        |                   |  |
|----|--------------------|------------------------|-------------------|--|
| 23 | 대 치 데 이 케<br>어 센 터 | 강남구 역삼<br>로 69길 22     | 노인 재가복지<br>서비스 제공 |  |
| 24 | 학수정데이케<br>어센터      | 강남구 도산<br>대로 17길<br>45 | 노인 재가복지<br>서비스 제공 |  |
| 27 | 명 화 데 이 케<br>어 센 터 | 강남구 광평<br>로 51길 49     | 노인 재가복지<br>서비스 제공 |  |
| 28 | 목 련 데 이 케<br>어 센 터 | 강남구 개포<br>로 617-8      | 노인 재가복지<br>서비스 제공 |  |

| 연<br>번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주관<br>부서           |
|--------|----------------------|------------------------|----------------------------------------|--------------------|
| 5      | 강남구푸드<br>지원센터        | 강남구 삼성<br>로72길 7       | 저소득주민 결식<br>해소 및 식생활<br>지원             | 복지<br>정책<br>과      |
| 10     | 한아름재가<br>노인지원센<br>터  | 강남구 개포<br>로24길 29      | 독거노인 복지<br>서비스 제공                      | 어르<br>신<br>복지<br>과 |
| 40     | 강남구수어<br>통역센터        | 강남구 학동<br>로 343        | 장애인 수어통역<br>서비스 제공                     | 장애<br>인<br>복지<br>과 |
| 41     | 강남구청소<br>년상담복지<br>센터 | 강남구 광평<br>로 144        | 청소년 전문 상<br>담서비스 제공                    | 가족<br>정책<br>과      |
| 42     | 강남청소년<br>수련관         | 강남구 영동<br>대로131길<br>26 | 청소년 취미 및<br>여가생활 프로그<br>램 제공           |                    |
| 43     | 역삼청소년<br>수련관         | 강남구 논현<br>로64길 7       | 청소년 취미 및<br>여가생활 프로그<br>램 제공           |                    |
| 44     | 일원청소년<br>독서실         | 강남구 개포<br>로116길 21     | 청소년 독서문화<br>진흥 및 교육문화<br>프로그램 제공       |                    |
| 45     | 역삼다함께<br>키움센터        | 강남구 논현<br>로64길 7       | 초등학생 방과<br>후 돌봄 및 교육<br>프로그램 제공        |                    |
| 46     | 청담다함께<br>키움센터        | 강남구 영동<br>대로131길<br>26 | 초등학생 방과<br>후 돌봄 및 교육<br>프로그램 제공        |                    |
| 47     | 누리봄다함<br>께키움센터       | 강남구 영동<br>대로 22        | 초등학생 방과<br>후 돌봄 및 교육<br>프로그램 제공        |                    |
| 48     | 자곡다함께<br>키움센터        | 강남구 자곡<br>로 100        | 초등학생 방과<br>후 돌봄 및 교육<br>프로그램 제공        |                    |
| 49     | 강남구다문<br>화가족지원<br>센터 | 강남구 개포<br>로 617-8      | 한국어 교육, 가족<br>교육 및 상담, 역량<br>강화 등 정보제공 |                    |
| 50     | 강남구여성<br>능력개발센<br>터  | 강남구 봉은<br>사로 320       | 여성의 취·창업 지<br>원, 역량강화 평생<br>학습 등 제공    |                    |
| 51     | 강남구가족<br>센터          | 강남구 개포<br>로 617-8      | 교육, 상담, 문화,<br>지원 등 가족서<br>비스 제공       | 보육<br>지원<br>과      |
| 52     | 강남구육아<br>종합지원센<br>터  | 강남구 삼성<br>로72길 7       | 어린이집과 가정<br>양육 지원                      |                    |
| 53     | 가로수 어                | 강남구 압구                 | 취학 전 아동 보                              |                    |

## &lt;신 설&gt;

|    | 린이집           | 정로18길 28         | 호 및 교육 제공          |
|----|---------------|------------------|--------------------|
| 54 | 가온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618길 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55 | 강남대시앙포레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34길 5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56 | 강남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109길 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57 | 개포스타힐스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 1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58 | 구민회관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 15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59 | 논현 어린이집       |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6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0 | 다솔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 26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1 | 대청 어린이집       | 강남구 양재대로37길 1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2 | 대치도담 어린이집     | 강남구 선릉로64길 33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3 | 대치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65길 1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4 | 도곡 어린이집       | 강남구 선릉로 21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5 | 디에이치자이개포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 2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6 | 래미안라클래스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 65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7 | 명화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51길 4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8 | 목련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 617-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69 | 미담 어린이집       | 강남구 일원로 11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0 | 바름 어린이집       | 강남구 언주로164길 3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1 | 방죽 어린이집       | 강남구 뚝방로24길 7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2 | 보람 어린이집       | 강남구 남부순환로397길 1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3 | 보미나 어린이집      | 강남구 학동로20길 2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4 | 산들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3길 4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5 | 삼성 어린이집       | 강남구 영동대로122길 7-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6 | 선우 어린이집       | 강남구 도곡로18길 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7 | 선재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71길 3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8 | 선혜 어린이집       | 강남구 선릉로 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79 | 성아 어린이집       | 강남구 논현로32길 1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0 | 세곡나비          | 강남구 자곡           | 취학 전 아동 보호         |

## &lt;신 설&gt;

|     |              |                  |                    |
|-----|--------------|------------------|--------------------|
|     | 어린이집         | 로 230            | 호 및 교육 제공          |
| 81  | 세 곡 연 두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3길 2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2  | 세곡푸르지오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 2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3  | 세 곡 햇 빛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 26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4  | 소담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110길 5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5  | 수서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24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6  | 수연 어린이집      | 강남구 봉은사로59길 2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7  | 신동아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590길 1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8  | 신사 어린이집      | 강남구 도산대로15길 2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89  | 신한마리오 어린이집   | 강남구 테헤란로30길 2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0  | 압구정아람 어린이집   | 강남구 압구정로 31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1  | 압구정 어린이집     | 강남구 언주로157길 8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2  | 언북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135길 42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3  | 역삼가애 어린이집    | 강남구 도곡로37길 1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4  | 역삼 어린이집      | 강남구 테헤란로22길 4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5  | 연화 어린이집      | 강남구 학동로43길 1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6  | 예다솜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571길 2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7  | 예지 어린이집      | 강남구 언주로7길 23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8  | 예향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22길 87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99  | 오르다 어린이집     | 강남구 봉은사로 73길 3-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0 | 일원 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3길 2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1 | 자곡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 175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2 | 지혜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 11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3 | 청담 어린이집      | 강남구 도산대로56길 1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4 | 청마을 어린이집     |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5 | 청수 어린이집      |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6 | 초록 어린이집      |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7 | 초롱 어린이집      | 강남구 삼성로 629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8 | 포 레 스 트 어린이집 | 강남구 개포로 264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09 | 푸른 어린이집      | 강남구 자곡로7길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 110 | 한별 어린이집      | 강남구 봉은사로82길 23   |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신 설>

|     |                     |    |                    |                        |  |
|-----|---------------------|----|--------------------|------------------------|--|
| 111 | 한빛<br>이집            | 어린 | 강남구 광평<br>로34길 35  | 취학 전 아동 보<br>호 및 교육 제공 |  |
| 112 | 한울<br>이집            | 어린 | 강남구 삼성<br>로51길 25  | 취학 전 아동 보<br>호 및 교육 제공 |  |
| 113 | 한티<br>이집            | 어린 | 강남구 영동<br>대로57길 7  | 취학 전 아동 보<br>호 및 교육 제공 |  |
| 114 | 해솔<br>이집            | 어린 | 강남구 현릉<br>로590길 88 | 취학 전 아동 보<br>호 및 교육 제공 |  |
| 115 | 힐스<br>이집            | 어린 | 강남구<br>자곡로3길<br>21 | 취학 전 아동 보<br>호 및 교육 제공 |  |
| 116 | 강남구청직<br>장 어린이<br>집 | 어린 | 강남구 학동<br>로 426    | 취학 전 아동 보<br>호 및 교육 제공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개인 · 단체 · 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56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가. 해당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일부 개정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관련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의무 및 타 위원회 수행 가능 조항 신설(제9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강남구 학동로426 본관4층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2015071722@gangnam.go.kr
- 팩 스 : (02) 3423 - 883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복지정책과(전화 :02- 3423 - 57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http://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각각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u>조례</u> 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u>조례</u> 는 「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에 따라 -----<br>-----<br>-----<br>-----.                                                                                            |
| 제6조( <u>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u> )<br>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u>종합계획</u>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u>종합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u>정책</u> 방향과 목표<br>2. ~ 4. (생략) | 제6조( <u>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u> )<br>① -----<br>-----<br><u>지원계획</u> -----<br>--.<br>② ----- <u>지원계획</u> -----<br>-----<br>-----.<br>1. -----<br>----- <u>기본</u> -----<br>-----<br>2.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성명(개인 · 단체 · 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40호

##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준공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제86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분준공인가를 하고, 동법 제83조에 따라 공사의 완료 및 부분준공인가 사항을 우리 구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2023. 3.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

나. 명 칭: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석양)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510, 402호(개포동, 현대빌딩 4층)

## 4. 부분준공인가의 내역

가. 획지면적: 142,628.4㎡

나.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35층, 건축면적 28,942.20㎡, 연면적 641,456.80㎡,  
건폐율 20.29%, 용적율 249.85%

다. 인가범위: 공동주택(아파트) 35개동 3,3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5. 공사기간: 2019.12.27. ~ 2023.02.28.

## 6. 부분준공일자: 2023.02.28.

## 7.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3423-6116)로 연락바랍니다.